

금융위원회고시 제2015-35호

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: 100분의 8 이상”을 “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: 100분의 6이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”를 “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경영지도비율) ①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 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 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 본비율 : 100분의 8이상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12조(경영개선조치) ① 금융위 는 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(이하 “경영개선조치”라 한다)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제4조에서 정하는 <u>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</u></p>	<p>제4조(경영지도비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 본비율 : 100분의 6이상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경영개선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</u></p>